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금지 및 자격요건 강화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금지 및 자격요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8. 5. 28.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보험가입 의무 등 일부 조항은 1년).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 및 자격 요건 강화(본건 개정안 제45조의3 제3항, 제7항 신설)

-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본건 개정안 제32조의3 신설)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조항은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선적 적용(본건 개정안 제5조)

- 본건 개정안 제5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접근권한 설정 실태에 대한 조사권한 신설(본건 개정안 제22조의 제4항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어플리케이션(App)의 접근권한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앞으로 위 규정에 근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플리케이션(App)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접근권한 획득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포·화약류 관련 정보 유통 금지(본건 개정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3 신설)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총포,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본건 개정안 제58조의2 신설)

-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 결제)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실장과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한 최재유 차관 외에 김영호 행정안전부 차관을 영입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관련한 자문을 다수 제공한 바 있고, 개인정보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업무, 입법 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59	E-Mail.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410	E-Mail. jyojang@shinkim.com
황정현 변호사	TEL. 02 316 1775	E-Mail. jhhwang@shinkim.com
김현이 변호사	TEL. 02 316 4070	E-Mail. hiekim@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

Seoul + 82 2 316 4114 | Pangyo +82 2 316 2121 | Beijing + 86 10 8447 5343 | Shanghai + 86 21 6235 0411

Ho Chi Minh City + 84 8 3827 4114 | Hanoi +84 24 3245 4013